별표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1. 논문 점수(양식 1) : 대표논문 30편 평가

1) SCI 등재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 기본점수는 3점에 논문게재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F)와 해당논문 피인용 횟수의 20%를 합한 값으로 한다.
- 논문의 종류에 따라 Original Article은 100%, Case Report는 30%, Review Article은 100% 인정한다.
- 제1저자, 책임저자(교신저자)는 100% 인정하고, 공동 제1저자, 공동책임저자는 저자 수에 따라 균등 배분(1/n)하여 인정한다.
-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수가 2인인 경우 50%, 3인인 경우 40%, 4인인 경우 30%, 5인 이상인 경우 20%를 인정한다.

예시 1) IF 2.5, 인용횟수 100, Original Article, 공동저자(2인)
점수 계산 : 3+((2.5+(100/5))×100%)×50%=14.25점
예시 2) IF 2.5, 인용횟수 100, Case Report, 책임저자
점수 계산 : 3+((2.5+(100/5))×30%)×100%=9.75점

2) SCI 미등재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 기본점수는 3점으로 한다.
- 논문의 종류에 따라 Original Article은 100%, Case Report는 30%, Review Articles은 100% 인정한다.
- 제1저자, 책임저자(교신저자)는 100% 인정하고, 공동 제1저자, 공동책임저자는 저자 수에 따라 균등 배분(1/n)하여 인정한다.
-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수가 2인인 경우 50%, 3인인 경우 40%, 4인인 경우 30%, 5인 이상인 경우 20%를 인정한다.

예시 1) 기본점수 3점, Original Article, 공동저자(2인)
점수 계산 : (3×100%)×50%=1.5점
예시 2) 기본점수 3점, Case Report, 책임저자
점수 계산 : (3×30%)×100%=0.9점

3) 논문의 형식(NEJM 분류기준)

- 제출된 논문은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또는 Review Article이어야 하며, Commentary(Editorial, Perspective, Clinical Implications of Basic Research, Letter to the Editor)나 Visual Article(Image, Video) 또는 기타(Special Report, Sounding Board)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게재 학술지의 IF는 논문이 게재된 연도의 수치를 반영하고, 해당논문의 피인용 횟수(Citation)는 최근 것을 반영하며, 학술지 IF와 논문 피인용 횟수는 Web of Science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문 학술저서, 역서, 편저(양식 2)

1) 저서는 전문 학술저서(교과서 포함)만 인정한다.(일반인, 환자 대상 제외)
2)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학술서의 번역서도 인정한다.
3) 단독 및 공동저자와 편저의 경우 아래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배정한다.

저자 수	단독	2인	3인	4인 이상 및 편저	chapter contribution
국내 저서 및 역서	5점	4점	3점	2점	1점
국외 저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 편저는 저서 전체를 편집하여 엮은 것을 말하며, chapter 일부를 저술한 것은 chapter contribution에 해당됨.

3. 학술지 편집활동(양식 3)

1) 학술지 편집인(편집위원장, 편집이사)으로 활동한 경력만 인정하며, 현직 편집인도 포함한다.
2) 학술지 편집활동은 SCI 등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배정한다.

구분	SCI 등재 전문 학술지	SCI 미등재 전문 학술지	비고
점수	5점	2점	최대 20점

3) 여러 학술지의 편집인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되 20점을 상한으로 한다. 단, 동일 학술지 편집인의 연임은 1회로 간주한다.

예시) JKMS 편집위원장, 대한영상의학회지 편집이사(2회 연임)
점수 계산 : 5점+5점=10점

4. 학회 또는 대학 내 활동(양식 4)

1) 의학한림원의 전공분야별 분과에 해당하는 학회의 대표(회장, 이사장) 경력만 인정하며, 현직 회장/이사장도 포함한다. 단, 이사장 제도로 운영되는 학회의 학회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2개 이상 학회의 대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되 20점을 상한으로 한다. 단, 동일 학회 대표의 연임은 1회로 간주한다.
3) 소속대학의 학장 경력이 있는 경우 10점을 인정하되 20점을 상한으로 한다. 단, 동일 대학 학장의 연임은 1회로 간주한다.

예시) 대한내과학회 회장(불인정),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대학 학장
점수 계산 : 10점+10점=20점